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김태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경기문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춘곤,
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
도문열, 문성호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송경택, 옥재은,
유정인, 이민석, 이봉준,
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
최민규, 허 ·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31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 및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습니다.
- 이에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률에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지원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항 삭제 (안 제51조 제5항).
- 나.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 삭제 (안 제77조 제1항~제2항).
- 다. 상위법률에 있는 조항 삭제 (안 제77조 제3항, 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1조(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) ① ~ ④ (생략) ⑤ <u>조정대상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조정기간 중이라도 공공지원자와 협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1조(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</p>
<p>제77조(시공사 등의 선정기준) ① <u>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(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7조(시공사 등의 선정기준) 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한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④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<삭 제>

⑤·⑥ (생략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